

제14장 중소기업

제14.1조 목적

1. 당사자들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, 고용 및 혁신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고, 따라서 중소기업이 이 협정에 의하여 창설되는 기회를 활용하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2. 당사자들은 중소기업의 이 협정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이 협정의 다양한 장의 규정을 인정한다.

제14.2조 정보 공유

1. 각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플랫폼의 설립 및 유지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 협정 관련 정보의 공유 그리고 당사자들 간 지식,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증진한다.
2. 제1항에 따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.
 - 가. 이 협정의 전문
 - 나. 그 당사자가 중소기업과 관련된다고 여기는 무역 및 투자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, 그리고
 - 다.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유용하다고 여기는 추가적인 사업 관련 정보

3. 각 당사자는 제2항에 언급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.

제14.3조 협력

당사자들은 이 장에 따라 그들의 협력을 강화하고,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촉진적이고 투명한 무역 규칙 및 규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것
- 나. 기업 간 파트너십의 증진 및 촉진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를 개선하는 것
- 다.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증진하는 것
- 라. 당사자들의 기업 프로그램 간의 경험 교류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 것
- 마. 혁신 및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것
- 바. 중소기업 간 지식재산체계의 인식, 이해 및 효과적인 사용을 증진하는 것
- 사.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규정,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우수한 규제 관행 및 역량 강화를 증진하는 것, 그리고
- 아. 중소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

제14.4조 집축선

각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 내에 이 장에 따른 협력 및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 그 하나 또는 복수의 접촉선에 관한 세부 연락사항을 통보한다. 각 당사자는 그러한 세부 연락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.

제14.5조 **분쟁해결의 비적용**

이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.